

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7. 14.

제안자 : 이 필 용 의원의외

1. 수정이유

-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실시요건 중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하고, 투표운동 관련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주민투표의 대상 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.(안 제4조제3호)
-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함.(안 제5조제2항)
- 투표운동 관련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함.(안 제16조)

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호중 “대규모 투자사업”을 “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중 “16분의 1이상으로”를 “20분의 1이상으로”로 한다.

안 제16조 전단중 “일몰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 전까지는”을 “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”으로 한다.